

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[별표 4] <개정 2023. 7. 4.>

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(제17조 관련)

위 반 행 위	근거조문	처분기준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	법 제35조제1항 제1호	자격취소
2. 법 제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	법 제35조제1항 제2호	자격취소
3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	법 제35조제1항 제3호	
가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훈련기관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 또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인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		자격정지 1년
나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훈련기관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제한 또는 법 제19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		자격정지 2년
4.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	법 제35조제1항 제4호	
가. 1회		자격정지 3년
나. 2회 이상		자격취소